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
2023. 11. 28(화) 10:00

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
보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푸른미래도시국 주택과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26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11. 1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11. 15.

2. 제안이유

상위법령 폐지 및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,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나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폐지 및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2조 및 제6조)
- 나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3조 및 제4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
 - 1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
 - 2)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
 - 3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5조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조, 제85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3. 10. 11.~ 2023. 10. 31.(20일 이상)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이유

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폐지 및 개정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고,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1) 상위법령 폐지 및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2조 및 제6조)

| 해당 조항 | 폐지 법률 | 준용 법률 | 비고 |
|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안 제2조 | 도시계획법 (2002. 2. 4 폐지)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2003. 1.1) | |
| | 토지수용법 (2002. 2. 4 폐지) |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(2003. 1. 1) | |
| | 자연재해대책법 (2005. 1. 27 전부개정) |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5조 | |
| 안 제6조 |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(2002. 2. 4 폐지) |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(2003. 1. 1) | |

2)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3조 및 제4조)

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폐지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(약칭: 국토계획법)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117호, 2022. 12. 27.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1. 4. 14., 2012. 12. 18., 2015.

1. 6., 2017. 4. 18., 2017. 12. 26., 2021. 1. 12.>

10. “도시·군계획시설사업”이란 도시·군계획시설을 설치·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.

11. “도시·군계획사업”이란 도시·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

가.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
나.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

다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사업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(약칭: 토지보상법)

[시행 2023. 4. 18.] [법률 제19370호, 2023. 4. 18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토지등”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·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.

2. “공익사업”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4조(공익사업)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. <개정 2014. 3. 18., 2015. 12. 29.>

1. 국방·군사에 관한 사업

2.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·인가·승인·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·도로·공항·항만·주차장·공영차고지·화물터미널·궤도(軌道)·하천·제방·댐·운하·수도·하수도·하수종말처리·폐수처리·사방(砂防)·방풍(防風)·방화(防火)·방조(防潮)·방수(防水)·저수지·용수로·배수로·석유비축·송유·폐기물처리·전기·전기통신·방송·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

3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·공장·연구소·시험소·보건시설·문화시설·공원·수목원·광장·운동장·시장·묘지·화장장·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

4.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·인가·승인·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·도서관·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

5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, 교량, 전선로,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
7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,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
8.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(약칭: 재난안전법)

[시행 2023. 8. 17.] [법률 제19406호, 2023. 5. 16., 일부개정]

제45조(응급부담)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·건축물·인공구조물,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,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.